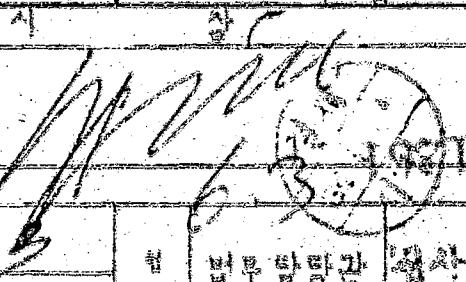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번호 문서번호	안사150-1681	전송구성	4 쪽 / 향 시자 면접사항
처리기간	82. 6.		
시행일자	82. 6.		
보통면접	영구		
보 조 처 판	부서장 000226.3 내부국장 05/16 인사과장 000226.3	협 법무 담당관 81.4.20 개정 81.6.1 시행 제1개정 82.4.27 개정 제2개정	
기 한 의 임	고용실사 66.6.1 이기한 420호	발 신	통 제 접수일 1982. 6. 6
수 신 한 화	기안자 인사과	발 신	
제 목	서울특별시 고용실사(인사상태 및 고용지역) 위원회은 영구(영구) 제1차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 것			
<p>1.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81.4.20 개정, 81.6.1 시행) 및 공무원 고용지역 규정 (대통령령 제10344호, 81.6.10)과 82.4.27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고용실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각급 고용실사 위원회를 설치 을 일하야야 할것이나</p>			
<p>2. 실무 기관의 실무 담당직원들의 사무 취급 요령이 미숙하여 운영이 차질되고 있어 인사규칙 제95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고용실사 업무(인사상태 및 고용지역) 취급요령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병합과 같이 개정 시행코자 하오니 재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설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무원법 제76조의2 			

0201-1-8A(감)
1982. II. 10. 수립

정직  창조

190mm x 260mm (2면인쇄용지 60g/m²)

43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4조

나. 고충심사 업무 취급 요령 요지

○ 고충심사 관장 기관

명칭 : 고충심사위원회 (26개 기관)

관장 기관 : 인사위원회

설치부서 : 본청 인사과, 주 출부과, 사업소 투무과

○ 고충심사위원회 명칭 및 본부 사항 : 별첨

○ 위원회 설치 :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임명으로 가름

○ 위원회 운영 시행 : 고충심사 업무 취급 요령 시행 즉시

시행

○ 서식 제정 시달 : 공무원 고충제기 규정 및 통합고충심사

위원회 운영 약규(총무처 약규 제133호)

에 준함

다. 기타 행정 사항

○ 위원회 위원 조각 : 26개 (기관별 조각) 위원회 정원(26명)

1. 위원 규격은 관인규정에 의함 (26명)

○ 서식 제정 시달 : 대장, 청구서 서식, 고충심사 접수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요구, 청구서 처리장, 심사보고서, 심사준서,
결정문 표지를

첨부 : 1.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장 및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규정(약

규) 1부

(제2안)

수신 문화공보관

제국 시보 개체 의회

1.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임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애교 제 호)을 별첨과 같이 제정하였기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고종실사 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1부

(列) 五

수신 수신자 장로

제록 서울특별시 고용실사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급요령 (이하) 시다

1. 서울특별시 고충설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규정을
서울특별시 예규 제_____호로 제정 시행하니 각급 기관장은 은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통 이구는 시보에 기재하였음을 통보하니 활용에 철자로 기할것. 끝

수신처 : 서구 1-17, 종합건설본부, 지하철운영사업소, 공무원교육원, 세종문화
의관,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황 및 고충 처리)위원회 운영규정

1. 제정 이유

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황 및 고충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3조에 의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적인 사무처급 요령의 시발로 고충심사업무의 능률화 확보.

2. 주요 과자

가.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명칭 및 심사기능

위 원 회 명 칭	기능	심 사 기 능	관 징
서울특별시보통고충심사 위원회	1심	6급 이하국 가공무원	서울특별시인사 (보통장례)위원회
서울특별시고충심사위원회	1심 및 2심	5급 이상지방공무원 (1심) 6급 이하지방공무원 (재심)	서울특별시인사 위원회
본청고충심사위원회	1심	본청, 시립대학, 농촌지도소, 국산 마사업소의 6급 이하지방공무원	본청고충심사 위원회
구 고충심사위원회	1심	구 소속 6급 이하지방공무원	구 인사위원회
사업소고충심사위원회	1심	6개직할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사업소고충심사 위원회 또는 인사 위원회

나. 위원회의 회원과 직원의 실사자세

1. 공무원의 관리 보장과 국가방전지원

2. 공무원의 관무의무와 사기양양 및 고충실사 비밀유지

3. 사무 학급요령 세분화 및 서식서량

위원회에 회부

접수처장

분류 (고충, 인사, 기타)

(기관장)

방법위원회 차장

실사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

1. 고충실사사항 : 자료실사, 사실조회, 면담
2. 인사상담사항 : 면담 (접수인 소환)
3. 안내사항 : 인사상담에 준할

실사보고서 작성외부

(위원장 → 위원회)

(방법위원회)

실사기밀 치명통지

(위원장 : 5일전)

방사자율식료는

시민심의

실사

(위원회)

결정통지

10일

(위원장 → 기관장)

이내

당해인

처리결과통지

(기관장 → 당해인)

서울특별시 예술재

서울특별시 고종십사(인사상당 및 고종자비)위원회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출시	1982.6.2	제 5호
제작자	민서개장	법무법인명
인증	200	인증

1992. 6.

이상금을 빼고는 그다지 다른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평시 긴급실사(의사상태 및 고충자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1971호, 1982.4.27)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고용심사위원회 및 기관별 고용심사위원회(이하 "의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용 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설치 기관장과 위원회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의원회 명칭 및 실사기능) 의원회의 명칭, 실사기능 및 관장기구는
다음과 같다.
~~의원회는~~

의원회명	심사 대상 및 기능	감장기구
서울특별시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6급 이하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1심)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고충심사 위원회	5급 이상 지방공무원 → 6급 및 기능직(1심) 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재심)	"

본 청교총 실사의원회	본 청, 시립대학, 농촌지도소, 죽산야 사업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심)	본 청교총 실사 의원회
00 구 고충실사의원회	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 직 (1심)	구 인사의원회
종합건설본부 고충실사 의원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심)	종합건설본부 인사의원회
지하철운영사업소 고충 실사의원회		지하철운영사 업소 인사의원회
공무원고육원 고충실사 의원회		공무원고육원 고충실사의원회
세종문화회관 고충실사 의원회		세종문화회관 고충실사의원회
지하철건설본부 고충실사 의원회		지하철건설본부 고충실사의원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고충 실사의원회		종합기술시험 연구소 고충실 사의원회

제4조 (의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직원) ① 의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이 되~~ ^{임명}되며 그 중 상임직위자를 임명하고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장~~ ^{장이} ~~직전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직원은 간사 및 서기로 하여 서울특별시 보통고충실사의원회

및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의원회는 인사과장을 간사로 하고, 고과제장을
서기로 하며, 기관별 고충심사의원회는 인사의원회 사무 담당책장을
간사로, 담당책원을 서기로 한다.

제5조(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황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 처리일부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공무의욕과 사기를 높임시켜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해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대처로
공정 선수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절차 및 사무취급요령) 고충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및 사무취급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서 제출 : 인사상황 및 고충심사청구서(별표1호 서식)2통을
작성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접수 처리 : 위원회설치 기관장을 청구서 접수즉시 당해
고충심사의원회 관장부서에 서수 받은 후에 의무 이송하여야 하며,
사무직원은 고충심사처리 대장(별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청구서 처리
전(별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탐방의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고충심사
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 요구서(별표4호 서식)에 의무
청구서 1통을 첨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청구 관계 자료 처리 : 사무직원은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가 제출되면 청구서, 심사자료와 함께 청구 관계자료 처리전(별표
5호 서식)을 탐방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탐방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처리의견 작성제출 : 탐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과 만남을 하거나 관계기관 자료로 사용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탐방위원회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심사보고서(별표6호식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5. 심사기일 지정통지 : 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켜 전송토록 할 때에는 고충심사기일지정통지서(별표7호식식)를 심사일 5일전까지 청구인과 해당기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전송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전송한 때에는 고충심사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전송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최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자체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자체회의는 각각 위원회를 위하여 상대방(상사 대상)과 함께 회의에 일시회의는 위원장이 일시회의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사무처원 등으로 청구 당사자 및 종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사무처원은 심사조서(별표8호식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심사조서는 회의록으로 가름 할 수 있다.

제9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당사자가 회자한 후 1. 인용(시정 요청) 2. 기각, 3. 각각 등으로 결정된다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② 탐방위원회는 상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별표9호식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정문의 송부)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결정문부서/07 이내에

받은 후 원본에 의거 편본~~증~~을 작성하여 ~~작성자인~~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제11조(고충 처리연장 제2) 위원회를 관할하는 주무 과장은 월별, 분기별로 고
충 처리 현황(별표 제10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기관별 고충
심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장 및 서울특별시(인사과장장과)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확인) ① 각급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고충심사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각급 기관장은 출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인
사과 학통)의 인사감사 및 서울특별시의 인사 업무 지침에 ~~적용~~ 적용 자료 제출 등
을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보관) 관계 기록은 ~~기록~~ 기록 ~~기록~~ 기록 관리하여 간인하여 정리하고 풀문서보관,
보관유정의 위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1152

20-10

(별지 7)

인사상황 및 고충설사 청구서

1. 고충설사 청구 번호 :

2. 청구인 성명 :

소 속 : 차명 :

생년월일 :

주 소 :

3. 임용권자(재임 청구 시 기재)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9 년 월 일

청구인

(인)

0 0 0 0 상 (의원회 설치 기관장) 과 하

20-11

53

제5장 제작자와 제작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

(별지 3)

청구서 척크전

시기	간사	의원장

사건	담당의원	
성명	직급	생년월일
주소		
인증서		
임용관자 (관계기관의장)		

청구요지

시설

(별 툴 4)

0000 고충심사 위원회

청구 번호

198

수신

창조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개자료 제출요구

198 고소송 예' 공부하는 (으)로

부터 법점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통지에 국 가 ~~기부~~ (지부)
공부원법 제75조의2제5항(제67조의2제4항) 및 공부원고충심사법규령 제7조(서
울특별법시 인사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자료를 요구하
니 198 까지 기일임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 이유 각 항에 대한 항목별 명명서 및 그 일증관계자료

• 서식 (예)

청 구 이 유	변 명 사 유	일 증 관 계 자 료
---------	---------	-------------

2. 기타 본건 솔명에 필요한 간접법규 및 자료

위 청구간개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야 하며, 각 청구간개자료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충심사청구서 1통, 끝.

00000 고충심사 위원회의원장

정부공문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경

1156

20-11

(별표 5)

청구 관계자료 처리 전

	시기	간사	담당의원
사건			
담당의원			
청구 처리			
<u>변명요지</u>		<u>입증 관계자료</u>	
[Redacted]			57

(第 五 6)

설사모금세

(별 표 7)

0 0 0 0 0 고 층 심사 의 원 칙

기간 8 ~

()

19

수신

제록 고 층 심사 기일 통지

19 년 월 일자로 의아(의소속)가 청구한 고 층 심사를
아태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 고 층 서류유형 제8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태의인 치장서를 치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기일 전에 당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전술 서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일 : 19

○ 출석장소 :

(四一三)

설사로사

사건명	성 구 인		파 장 구 인
일시 1988. 1. 1.	장소		심사회의실
의원장 :			
의원 :			(인)
관계위원 :			
성구인 :			
출장당사자	피장구인 :		
의원장은 8-			고충심사에 대한 심사
회의의 개최를 신안하다			
은 고충심사 당사자를 이 대하여 인정 심문을 실시하여 당사			
차임을 확인하다			
의원장은 고충심사 당사자를 이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 바,			
은 성구의 취지와 성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성구인에게 제			
출한 성구서 내용과의 상위우무를 확인한 바,			

[Signature] 26-18

(별 표 9)

제 9
장

사 간 8 - 청구

청구인 : 설 명 ()

소 속 : 직급

주 소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19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신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

* * 다음에는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관순으로 작성

20-19

(별 표 10)

2. 총 심사 치수 현황

19 연세

1. 접수 : 건

- 이월 :
- 일반청구 :
- 재심청구 :

2. 처리 : 건

구 분	개	일반청구	재심청구
◦ 개			
◦ 시장요구			
◦ 가 약			
◦ 과 약			
◦ 취 약			
◦ 재심인용			
◦ 정책반영			

3. 진행 : 건 (일반청구 건, 재심청구 건)

- 공월중 심사 예정
- 익월 심사 예정
- 조사중